산업안전보건법위반

[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. 10. 22. 2008고정435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외 3인

【검 사】 허성규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태양(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) 담당 변호사 설창환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벌금 1,000,000원, 피고인 2, 피고인 3 주식회사를 각 벌금 3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 1,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